

# 운서역 푸르지오 더 스카이 일반공급 당첨자 구비서류

## 구비서류

구분	해당서류	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
필수 서류	신분증	-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
	인감증명서	-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(대리인 불가) ※본인 발급용(대리인 발급용 불가)
	인감도장	-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신청 시는 생략
	가족관계증명서	- 성명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 포함하여 '상세' 로 발급
	주민등록표등본	- 성명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
	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서	- 견본주택 비치
	서약서	- 견본주택 비치
	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	- 세대구성원 전원,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
해당자	주민등록표등본(배우자)	-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(혼인자녀 분리세대 포함)
	혼인관계증명서(자녀)	- 자녀가 만 18세 이상일 경우, '상세'로 발급
대리인 신청시	※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(직계존·비속 포함)로 아래 서류 추가 제출	
	인감증명서, 인감도장	- 용도 : 임대차계약 위임용(청약 신청자), ※ 본인 발급용(대리인 발급용 불가)
	위임장	-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, 접수 장소에 비치
	대리인 신분증	-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(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,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)

※ 위 필요서류는 임차인 모집공고일(2021.01.06.)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, 견본주택에서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.

※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,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나 정정은 할 수 없음.

※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.

# 운서역 푸르지오 더 스카이 특별공급 당첨자 구비서류

## 구비서류

구분	해당서류	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
필수 서류	신분증	-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
	인감증명서	-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(대리인 불가) ※본인 발급용(대리인 발급용 불가)
	인감도장	-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신청 시는 생략
	가족관계증명서	- 성명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 포함하여 '상세' 로 발급
	주민등록표등본	- 성명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
	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서	- 견본주택 비치
	서약서	- 견본주택 비치
	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	- 만 19세 이상 본인 및 세대원 모두 발급
	소득관련 서류	- 만 19세 이상 본인 및 세대원 모두 발급
	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	- 세대구성원 전원,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
해당자	사실증명원	- 소득이 없는 세대원 또는 소득이 없는 자
	비사업자 확인각서	- 견본주택 비치 /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
	주민등록표등본(배우자)	- 배우자 분리 세대원 및 혼인 예정 인 경우 배우자 기준 '상세' 발급
	혼인관계증명서	- 혼인신고일 확인서, '상세' 로 발급(혼인자녀 분리세대 포함)
	혼인관계증명서(자녀)	- 자녀가 만 18세 이상일 경우, '상세'로 발급
	임신증명서류	- 소득 관련 가구원 수 포함일 경우
	결혼확인서류	- 견본주택 비치,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 증명 필요
대리인 신청시	※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(직계존·비속 포함)로 아래 서류 추가 제출	
	인감증명서, 인감도장	- 용도 : 임대차계약 위임용(청약 신청자), ※ 본인 발급용(대리인 발급용 불가)
	위임장	-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, 접수 장소에 비치
	대리인 신분증	-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(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,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)

※ 위 필요서류는 임차인 모집공고일(2021.01.06.)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, 견본주택에서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.

※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,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나 정정은 할 수 없음.

※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.

# 운서역 푸르지오 더 스카이 소득증빙서류(특별공급 신청자용)

## 근로자

### 소득입증 제출서류

#### ■ 일반근로자

- ① 재직증명서(직인날인)
-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(직인날인)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원본(직인날인)  
※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
: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(매월 신고 납부 대상자 확인으로 발급)  
※ 연말정산 등으로 인해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기 전에 특별공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

#### ■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

- ① 재직증명서(직인날인)
-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(직인날인)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(직인날인)  
※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, 동일 호봉인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

#### ■ 전년도 전직자

- ① 재직증명서(직인날인)
-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(원본, 직인날인)

#### 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자(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)

- 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(직인날인) 또는 월별급여명세서(근로소득지급조서)  
※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

## 자영업자

### 소득입증 제출서류

#### ■ 일반과세자 / 간이과세자 / 면세사업자

-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
-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

#### ■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

- ① 간이과세자사업자등록증(원본)

#### ■ 신규사업자

- ① 국민연금 산정용 가입내역 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(부분)
- ② 사업자등록증

#### ■ 법인사업자

-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(원본)
- ② 법인등기부등본(원본), ③ 사업자등록증

#### ■ 보험모집인, 방문판매원

-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(원본)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(원본)
- ② 당해회사의 급여명세서, ③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
※ 직인날인 필수

## 국민기초생활 수급자

### 소득입증 제출서류

-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

## 비정규직 근로자 / 일용직 근로자

### 소득입증 제출서류

- ①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서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  
※ 근로계약서, 월별급여명세서 및 근로소득지급조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
- ② ①번 없는 경우,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(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)

## 무직자

### 소득입증 제출서류(2019.01.01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무직인 경우)

- ① 소득없음 사실증명원
- ② 비사업자 확인각서  
※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에 소득(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)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